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국회의입법조사처

---

#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김종갑(정치의회팀 입법조사관)

2012. 3. 26.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 요 약

선거구획정은 평등선거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선거제도의 본질적 요소이다. 즉 선거구획정의 목적은 유권자의 투표가치를 평등하게 반영함으로써 공정한 대표성을 보장하는데 있다.

이 보고서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획정안과 2012년 2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선거구획정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현행 선거구획정의 제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현행 선거구획정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획정기준 적용의 불명확성이다. 지난 2012년 2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선거구획정안을 보면 인구상한선(310,406명)을 준수하여 선거구획정이 이루어졌지만, 분구와 합구, 또는 경계조정 대상 선거구를 선정한 기준이 불명확하다. 예를 들어, 파주시와 원주시 선거구는 인구상한선을 초과하였다는 근거로 분구하였으나, 마찬가지로 인구상한선을 이탈한 여타 선거구는 분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인구상한선을 초과한 용인시처인구 선거구를 비롯한 일부 선거구는 분구하는 대신 경계조정에 그쳤다. 이처럼 인구기준에 따르면 분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선거구만 분구한 것은 선거구 획정기준의 일률적 적용에 한계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둘째, 선거구간 인구편차만을 고려하고 광역시·도간 인구편차는 고려되지 않았다. 선거구간 인구편차의 허용범위인 3:1에 속하더라도 광역시·도간 인구편차는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다. 광역시·도간 선거구 인구편차의 조정이 선거구획정의 일차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 광역시·도간 선거구 인구편차가 현격하게 나타나면 지역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셋째, 인구기준일 적용과 관련한 법적 규정의 미비를 들 수 있다. 선거구획정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구기준일의 적용이 선거 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획정결과에 대한 불신과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넷째,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권한과 위상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선거구획정위가 국회에 단순히 권고안을 제시하는 수준의 한시적 기구로서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획정위의 원안이 국회의 논의과정에서 정당의 당리당락에 의해 변경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왔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다음의 개선방향이 제안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선거구획정에는 인구수와 행정구역, 지역대표성, 선거구 평균인구수 등 다양한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012년 2월 27일 통과된 공직선거법 선거구획정안이 세종특별자치시의 단독선거구 설치를 결정한 것은 이러한 선거구획정기준의 다면적 고려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선거구획정의 인구기준 하한선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법적·행정적 위상과 지역대표성 등의 측면을 고려할 때 독립선거구로 설치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둘째, 인구기준에서 선거구획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선거구간’ 인구편차만을 기준으로 설정하기보다 ‘광역시·도간’ 대표성의 균형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개별 선거구간 인구격차가 전국단위에서 보면 허용범위 내에 있다 하더라도 광역시·도간 대표성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지역주의 투표성향이 존재하는 우리의 현실에서 지역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다만, 광역시·도간 인구편차의 문제는 개별 선거구간 인구편차의 문제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셋째, 인구기준일을 선거구획정이 충분한 논의와 사전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는 합리적 시점을 정하여 공직선거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선거구획정위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구획정위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권한강화는 선거구획정위의 원안이 국회논의과정에서 당리당략에 의해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율되어야 할 것이다.



# 차 례

## □ 요약

I. 머리말 / 1	
II. 19대 총선의 선거구획정위 확정안과 국회 개정 선거구획정 결과 / 3	
1. 선거구획정위의 안 .....	3
2. 개정 공직선거법의 선거구획정 결과 .....	4
III. 선거구획정 관련 규정 및 개정연혁 / 8	
1.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 .....	8
2. 역대 선거구획정 인구편차 .....	9
3. 헌법재판소 판례 .....	11
가. 헌법재판소 1995.12.27 선고 95헌마224결정 .....	12
나. 헌법재판소 2001.10.25 선고 2000헌마92결정 .....	12
IV. 외국사례 / 14	
1. 영 국 .....	14
2. 미 국 .....	15
3. 독 일 .....	16
4. 일 본 .....	17
V. 현행 선거구획정의 문제점 / 18	
1. 획정기준 적용의 불명확성 .....	18
2. 지역간 의석할당의 불균형 .....	19
3. 인구기준일 설정의 유동성 .....	23

4. 선거구획정위의 제한적 구속력 .....	24
--------------------------	----

## VI. 선거구획정의 개선방향 / 25

1. 선거구획정의 다면적 기준 고려 .....	25
2. 광역시도간 대표성의 균형 .....	26
3. 인구기준일의 법정화 및 합리적 설정 .....	28
4. 선거구획정위의 상설화 및 권한 강화 .....	29

## VII. 맺는말 / 30

참고문헌

부록: <시·도별 인구비율과 국회의석수 대비표>

## 표 차례

[표 1] 선거구획정위 원안과 개정 공직선거법의 선거구획정 결과 .....	5
[표 2] 역대 총선 지역구획정기준 및 최소·최대 선거구간 인구편차 .....	10
[표 3] 지역별 선거구 인구편차 현황 .....	21



## I. 머리말

- 2012년 2월 27일 제19대 총선의 선거구획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음
- 국회는 현재의 299석에서 1석 늘린 300석으로 확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174명 중 찬성 92명, 반대 39명, 기권 43명으로 통과시켰음. 동법은 2012년 2월 29일 법률 제 11374호로 공포·발효되었음
- 그동안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획정위)의 확정안은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여야간 이견과 입장차이로 공전을 거듭해오다가 중앙선관위의 의원정수 300석 중재안이 제시되면서 합의에 이르게 되었음
- 통과된 선거구획정안은 여야의 입장이 최종 조율되어 반영된 것이라는 점에서 나름의 의미는 부여할 수 있지만, 선거구 통합이 아닌 의석수 증설을 통해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음
- 물론 선거구획정 결과에 따라 해당 선거구의 존폐여부가 결정되고 그것은 곧 정당의 의석수 증감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간 입장차이를 좁히기 힘든 것이 사실임
- 하지만 통과된 선거구획정안이 오랜 논쟁을 거치면서 어렵게 합의에 이르렀지만 적지 않은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음. 이는 단순히 의석수의 증가라는 피상적 결과라기보다 현행 선거구획정의 구조적·내용적 문제점 들임
- 선거구획정의 기준 적용, 지역간 선거구 인구편차, 획정주체의 권한과

위상 등은 공정한 선거구획정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점들임

- 이 보고서에서는 현행 선거구획정의 제반 문제점을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고 그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선거구획정위가 제안한 선거구획정안의 주요 내용과 2012년 2월 27일 통과된 선거구획정안 그리고 외국의 선거구획정 운영사례 등을 고찰하였음

## II. 제19대 총선의 선거구획정위 확정안과 국회 개정 선거구획정 결과

### 1. 선거구획정위의 안

□ 선거구획정위가 지난 2011년 11월 25일 국회에 제출한 제19대 총선 선거구획정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10월 31일자 인구수 50,699,478명을 기준으로 전체 지역구를 248개로 분할한 선거구당 평균 인구수는 204,434명임. 인구상한선은 310,406명, 인구하한선은 103,469명으로 인구편차는 +49.45% ~ -48.96%(2.93:1)임

□ 이 범위에 따르면, 기존 단독선거구인 경기 파주시(373,629명), 강원 원주(320,329명), 경기 이천시여주군(313,831명), 경기 용인시수지구(315,656명), 경기 용인시기흥구(367,700명)는 분구 대상임

○ 또 인구상한선을 초과한 충남 천안시 을선거구(317,285명)를 분구하고, 부산 해운대구기장군 을선거구(228,677명)의 경우, 기장군(106,615명)이 단독선거구로 분구됨

□ 전남 담양·곡성·구례선거구의 경우, 담양은 전남 영광·함평·장성에, 곡성은 순천에, 구례는 광양에 각각 편입시켰고, 남해·하동선거구는 인접한 사천선거구와 합구하는 안을 제시하였음

□ 통합대상 선거구는 인구수 310,406명 또는 인구수 620,812명에 미달하는

- 1)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천기홍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으로 구성됨. 위원은 김진, 성낙인, 엄상익, 김진석, 조성렬, 장인식, 김태봉, 김당, 손혁재, 임명재 등으로 구성됨

### 선거구임

- 기존 3개 선거구로 구성된 서울 노원구 갑·을·병(605,404명)과 대구 달서구 갑·을·병(607,044명)은 2개 선거구로 통합됨
- 또 기존 2개 선거구인 서울 성동구 갑·을(302,454명), 부산 남구 갑·을(296,083명), 전남 여수시 갑·을(292,849명)은 1개 선거구로 통합됨
- 선거구획정위의 확정안에 따르면 전국 8개 지역구가 분구되고, 5개 지역구가 통합되어 지역구의석은 3석이 늘어나고, 이에 따른 의석증설을 막기 위해 비례의석 3석을 줄이는 안을 제시함

## 2. 개정 공직선거법의 선거구획정 결과

- 2012년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선거구획정안은 인구 373,629명인 파주시와 인구 320,329명인 원주시를 각각 갑·을선거구로 분구하고, 남해·하동선거구(104,342명)와 사천선거구(114,077명)를 사천·남해·하동선거구로 통합하는 방안임
- 또한 인구수 105,636명인 담양·곡성·구례군선거구를 인접한 3개의 선거구에 각각 편입시켜 순천·곡성(303,630명), 광양·구례(176,883명), 담양·함평·영광·장성(186,400명) 선거구로 재획정함
- 그리고 청원군 일부와 공주시 일부지역, 연기군 일원을 세종특별자치시로 독립선거구를 설치함
-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21조제1항의 단서조항을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1인으로 한다”로 변경하였음

- 이밖에 인구상한선을 초과한 선거구들은 분구하지 않고 경계조정을 통해 인구편차를 조정하도록 하였음
- 따라서 통과된 선거구획정안은 3개 선거구가 늘어나고 2개 선거구가 통합되어 전체 지역선거구의 수는 246석이 됨

[표 1] 선거구획정위 원안과 개정 공직선거법의 선거구획정결과

광역시·도	획정대상 선거구	획정안	광역시·도	획정대상 선거구	통과된 개정안
계	27	248	계		246
서울 (48→46)	성동구갑 (161,562)	성동구	서울 (48→48)	-	현행 유지 (강남구 갑을은 경계조정)
	성동구을 (140,892)				
	노원구갑 (178,017)	노원구갑			
	노원구을 (221,571)	노원구을			
	노원구병 (205,816)				
	강남구갑 (307,658)	경계조정			
	강남구을 (260,170)				
인천 (12→12)	남동구갑 (303,629)	경계조정	인천 (12→12)	남동구갑	경계조정
	남동구을 (190,671)			남동구을	

광역시·도	획정대상 선거구	획정안	광역시·도	획정대상 선거구	통과된 개정안
경 기 (51→56)	수원시권선거 (311,861)	수원시권선거갑 수원시권선거을	경 기 (51→52)	파주시 (373,629)	파주시갑 파주시을
	파주시 (373,629)	파주시갑 파주시을		용인시처인구	용인시 갑·을·병 선거구로 경계조정
	용인시기흥 (367,700)	용인시기흥구갑 용인시기흥구을		용인시기흥구	
	용인시수지 (315,656)	용인시수지구갑 용인시수지구을		용인시수지구	
	이천시여주 (313,831)	이천시 여주군			
강 원 (8→9)	원주시 (320,329)	원주시갑 원주시을	강 원 (8→9)	원주시 (320,329)	원주시갑 원주시을
경 북 (15→15)	-	-	경 북 (15→15)	-	-
경 남 (17→17)	-	-	경 남 (17→16)	남해·하동선거구 (104,342) 사천시선거구 (114,077)	사천·남해·하동시 선거구
대 구 (12→11)	달서구갑 (193,480)	달서구갑	대 구 (12→12)	-	현행 유지 (복구 갑을은 경계조정)
	달서구을 (242,822)	달서구을			
	달서구병 (170,742)				
	북구갑 (148,545)	경계조정			
	북구을 (302,124)				

II. 제19대 총선의 선거구획정위 확정안과 국회 개정 선거구획정 결과

광역시·도	획정대상 선거구	획정안	광역시·도	획정대상 선거구	통과된 개정안
부 산 (18→18)	남구갑 (147,001)	남구	부 산 (18→18)	-	-
	남구을 (149,082)				
	해운대기장갑 (302,800)	해운대구갑 해운대구을			
	해운대기장을 (228,677)	기장군			
울 산 (6→6)	-	-	울 산 (6→6)	-	-
전 북 (11→11)	-	-	전 북 (11→11)	-	-
전 남 (12→11)	여수시갑 (133,145)	여수시	전 남 (12→11)	담양·곡성·구례 군선거구 (133,145)	순천·곡성선거구, 광양·구례선거구, 담양·함평·영광·장 성선거구로 편입
	여수시을 (159,947)				
광 주 (8→8)	-	-	광 주 (8→8)	-	-
충 북 (8→8)	-	-	충 북 (8→8)	-	-
충 남 (10→11)	천안시을 (317,285)	천안시서북구갑	충 남 (10→11)	청원군 일부, 공주시 일부, 연기군 일원	세종특별자치시 로 독립선거구 신설
		천안시서북구을		천안시을선거구	천안시동남구와 경계조정
대 전 (6→6)	-	-	대 전 (6→6)	-	-
제 주 (3→3)	-	-	제 주 (3→3)	-	-

주: ( )안은 2011년 10월 31일 기준 인구수

자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보고서』, 2012.2.29 개정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참조 재구성

### Ⅲ. 선거구획정 관련 규정 및 개정연혁

#### 1.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

- 2012년 2월 29일 개정된 현행 「공직선거법」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는 선거구획정의 기준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국회의원지역구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제1항)
  -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구역은 선거구획정위에서 획정한 안을 반영하여 별표로 제작하게 된다.”(제2항)
- 선거구획정은 선거구획정절차를 규정한 현행 「공직선거법」 제24조 규정에 의해 국회에 설치된 선거구획정위에서 결정함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선거구획정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및 선거관리위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위촉함
- 선거구획정위는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고, 그 이유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늦어도 당해 국회의원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구의 선거일전 6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선거구획정위에서 제시한 획정안을 토대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

구획정안을 최종 작성하여 「공직선거법」의 별표를 수정하는 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킴으로써 국회의원 지역구를 획정하게 됨

## 2. 역대 선거구획정방식의 인구편차

- 제15대 국회의원선거 이전까지는 대략적인 인구수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함에 따라 표의 등가성이 충실히 반영되지 못하였음
- 하지만 제15대 국회의원선거부터는 현재와 같은 인구의 상하한선을 엄격히 적용한 선거구획정방식이 정착되기 시작하였음
- 제15대 총선은 인구 하한 7.5만, 상한 30만 명을 기준으로 통폐합 및 분구가 이루어졌음. 분구 기준을 초과하는 인구 30만 명 이상 60만 명 미만은 2개 선거구, 인구 60만 명 이상은 3개 선거구가 할당되었음
- 제16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인구 상하한 편차가 9만~35만 명으로 제15대의 인구편차 허용한도와 유사한 기준이 적용되었음
-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최대 3:1까지 허용하였음. 지역구의 인구하한선은 105,000명(16대의 9만 명)으로 높아져 농촌지역 선거구의 시·군들이 과거보다 더 많이 통폐합되었음
  - 반면, 낮아진 인구상한선 315,000명으로 인해 도시지역의 많은 인구를 가진 시·구들은 선거구를 분할해야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음
-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인구 하한 104,000명, 상한 312,000명으로 확정되었음(인구편차 3:1)
  - 인구하한에 미달하는 전남 영광·함평과 강진·완도는 인접 선거구와

통폐합되었음

○ 이에 따라 전남의 지역구 중 ‘광양·구례’, ‘담양·곡성·장성’, ‘함평·영광’, ‘해남·진도’, ‘장흥·영암’, ‘강진·완도’는 각각 ‘광양’, ‘담양·곡성·구례’, ‘함평·영광·장성’, ‘해남·완도·진도’, ‘장흥·강진·영암’으로 개편되었음

○ 민주당과 한나라당<sup>2)</sup>의 근거지인 영호남에서는 의석변동이 없으나, 수도권인 경기도만 종전보다 2석이 늘어 245석이 되었음. 지역구의석 2석이 늘어나는 대신 비례의석 2석을 줄여 전체의석 299석은 유지되었음

□ 아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역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획정 인구 기준을 살펴보면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점차 적어져 표의 증가성이 체고 되어 왔음을 알 수 있음

[표 2] 역대 총선 지역구 획정기준 및 최소·최대 선거구간 인구편차

총선	지역구 획정기준	인구 편차
제1대(1948)	인구 15만 초과시 초과하는 인구 10만마다 1개 선거구를 증설하되 인구가 비등하도록 획정 - 15만 미만 : 1개구, 15만~25만 : 2개구 - 25만~35만 : 3개구, 35만~45만 : 4개구	-
제2대(1950)	인구 15만 초과시 초과하는 인구 10만마다 1개 선거구를 증설하되 인구가 비등하도록 획정 - 15만 미만 : 1개구, 15만~25만 : 2개구 - 25만~35만 : 3개구, 35만~45만 : 4개구	-
제3대(1954)	인구 15만 초과시 초과하는 인구 10만마다 1개 선거구를 증설하되 인구가 비등하도록 획정 - 15만 미만 : 1개구, 15만~25만 : 2개구 - 25만~35만 : 3개구, 35만~45만 : 4개구	-

2) 2012년 3월15일 현재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당명을 각각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으로 변경하였으나 이 보고서에서는 과거의 당명을 그대로 사용함

총선	지역구 획정기준	인구 편차
제4대(1958)	인구 15만 초과시 초과하는 인구 10만마다 1개 선거구를 증설하되 인구가 비등하도록 획정	-
제5대(1960)	인구 15만 초과시 초과하는 인구 10만마다 1개 선거구를 증설하되 인구가 비등하도록 획정	-
제6대(1963)	인구 20만명 당 1인 선출	-
제7대(1967)	-	-
제8대(1971)	-	-
제9대(1973)	약 인구 40만명 당 2인 선출	3.98 : 1
제10대(1978)	-	4.29 : 1
제11대(1981)	약 인구 40만명 당 2인 선출	4.39 : 1
제12대(1985)	약 인구 40만명 당 2인 선출	5.97 : 1
제13대(1988)	약 인구 20만명 당 1인 선출	3.89 : 1
제14대(1992)	-	4.71 : 1
제15대(1996)	인구 하한 7.5만, 상한 30만을 기준으로 통·폐합 및 분구 - 인구 7.5만 이상 30만 미만: 1개 선거구 - 인구 30만 이상 60만 미만: 2개 선거구 - 인구 60만 이상: 3개 선거구	4.4 : 1
제16대(2000)	인구 하한 9만, 상한 35만을 기준으로 통·폐합 및 분구하고,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기타조건을 고려하여 결정	3.88 : 1
제17대(2004)	국회가 지역구획정에 관하여 인구하한 10만 5,000명, 인구 상한 31만 5,000명을 기준을 설정하여 획정위에 통지 - 획정위에서는 하한 105,892명, 상한 295,916명을 기준으로 지역구획정	2.8 : 1
제18대(2008)	획정위(2008.1.18 구성)에서는 2개의 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08.2.15)하였고, 하한 104,000명, 상한 312,000명을 기준으로 지역구 획정	3.0 : 1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 인구편차 관련 자료 재구성

### 3. 헌법재판소 판례

- 선거구 획정기준의 변화에는 1995년과 2001년에 있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였음. 선거구간 인구편차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가. 헌법재판소 1995.12.27 선고 95헌마224결정

- 1995년 1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인구편차의 기준으로서 전국단위에서 선거구 평균인구의 상하 60%(최소·최대선거구간 인구편차 4:1)를 이탈하는 선거구는 투표가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함(9인 중 5인 의견)
- 합리적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2:1로 설정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됨(5인 의견에 대한 3인 보충의견)
- 전국단위에서 최소·최대선거구간 인구편차가 4:1을 넘거나, 도시의 각 선거구간 또는 농어촌의 각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3:1을 초과할 경우 위헌이며, 향후 모든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2:1이 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됨(5인 의견에 대한 1인 보충의견)
- 4인의 의견에서는 도시와 농어촌의 선거구 인구편차를 독립적인 기준으로 삼아 전국 선거구의 평균인구수에서 상하 60%의 편차를 초과함과 동시에 같은 유형의 선거구 평균 인구수에서 그 상하 50%의 편차를 초과하는 선거구의 획정은 위헌이라고 보아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기도 하였음

나. 헌법재판소 2001.10.25 선고 2000헌마92결정

- 전원합의부에서 7대 2로 1995년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제시된 상하 60% 편차(4:1)를 위헌으로 결정하고, 상하 50% 편차(3:1)를 위헌여부의 기준으로 제시하였음
- 인구편차 상하 33⅓%(2:1)는 바람직하지만 행정구역 및 국회의원정수를

비롯한 인구비례의 원칙 이외의 요소를 고려함에 있어 적지 않은 난점이 예상되고, 또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지 5년밖에 되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여 앞으로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음

## IV. 외국사례

### 1. 영국

- 영국의 선거구획정은 1944년 제정된 「의석재분배법」(Redistribution of Seats Act)을 근거로 실시됨
- 의석재분배법은 1986년 「의회선거구법」(Parliamentary Constituencies Act)을 거쳐 1992년 「선거구위원회법」(Boundary Commissions Act)으로 발전됨
- 선거구획정은 하원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독립적 선거구위원회(Boundary Commission)에서 결정됨. 하원의장은 명목상 의장으로서 선거구 검토에는 관여하지 않음. 위원의 선임은 각 정당간 협의에 의하여 의원이 아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루어짐
- 선거구위원회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에 각각 설치된 선거구위원회로 하여금 매 10~15년 간격으로 선거구 현황을 조사·보고하도록 하고 있음<sup>3)</sup>
- 선거구획정의 기본원칙은 첫째, 전체 선거구가 제한되어야 하며, 둘째, 선거구 유권자수가 평균유권자수에 근접해야 하며, 셋째, 1구 1인 선출의 소선거구제 유지, 넷째, 런던 자치구(borough)나 주(county) 경계의 분할이 금지됨

3) 성낙인, 「지역구국회의원선거구획정에 있어서 인구편차의 기준」, 『서울대학교 법학』 제43권 제1호, 2002, pp.82-83 참조.

□ 선거구획정 절차

- 선거구위원회가 선거구획정 초안을 작성하여 권고안을 해당 선거구에 공표하고 1개월간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최종 권고서를 관계장관(스코틀랜드의 경우 스코틀랜드 담당장관, 북아일랜드의 경우 북아일랜드 담당장관)에게 제출함
- 관계장관은 필요시 수정을 가하여 권고서에 효력을 부여한다는 취지의 초안을 의회에 제출, 상하원의 승인을 받아 초안이 통과되면 선거구획정안이 다음 총선 때부터 적용됨

□ 1995년 확정된 선거구는 정체 선거구 중 75%가  $\pm 10\%$ (1.2:1), 나머지 선거구는  $\pm 40\%$ (2.3:1)의 인구편차를 보였음

## 2. 미국

- 1960년대 이전까지 미국의 선거구간 인구편차는 5:1을 상회했음. 하지만 1962년 '베이커 대 카(Baker v. Carr)' 사건이 발생하면서 불평등한 인구 비례에 따른 선거구획정이 미국 수정헌법 제14조 평등조항에 위배된다고 선언하였음.<sup>4)</sup> 이후 인구편차의 허용범위는 점차 축소되다가 현재 1.22:1(상하 10%)임
- 미국은 연방차원에서 별도의 선거구획정기구를 두고 있지 않고 주별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4)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Baker v. Carr Appeal from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middle district of Tennessee,” <[http://www.law.cornell.edu/supct/html/historics/USSC\\_CR\\_0369\\_0186\\_ZS.html](http://www.law.cornell.edu/supct/html/historics/USSC_CR_0369_0186_ZS.html)>.

- 선거구획정은 의회에서 정치세력간 협상결과에 맡기고 있으며, 공정성 확보를 위해 법원이 개입하고 있음
- 선거구 재획정은 10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센서스를 통해 각 주별 인구변동을 파악하여 선거구당 평균인구수를 기준으로 기존 선거구를 재설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선거구획정의 원칙으로 ‘인구수의 균등성’, ‘지리적 인접성’, ‘지형적 조밀성’ 등이 제시됨

### 3. 독일

- 독일은 1996년 11월 15일 개정된 연방선거법에 따라 상하편차 15%를 허용한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상하편차 25%를 반드시 준수해야할 최대 허용한도로 명시함으로써 인구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음<sup>5)</sup>
- 선거구획정위는 연방통계청장, 연방행정재판소 판사 등이 참여하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됨. 선거구획정위는 연방하원의 임기가 시작된 후 15개월 이내에 인구변동사항과 선거구 재획정 필요여부에 대하여 연방내무장관에게 보고함
- 연방내무장관은 보고서를 지체없이 연방하원에 제출하고 연방관보에 공표함
- 연방내무장관은 보고서의 추가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방정부는 선거구획정위의 안에 대한 법률안 작성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5) German Bundestag, "Bundeswahlgesetz," <[http://www.bundestag.de/dokumente/rechtsgrundlagen/bwahlg\\_pdf](http://www.bundestag.de/dokumente/rechtsgrundlagen/bwahlg_pdf)>.

## 4. 일본

- 1962년 이래 인구편차와 관련하여 문제제기가 있어온 이후 대체로 중의원의 경우 3:1 정도의 인구편차를 인정하는 경향이며, 참의원의 경우 5.26:1을 합헌으로 인정하고 있음
- 1994년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변경되면서 「중의원의원선거구획정심의회설치법」이 제정되어, 이를 법률적 근거로 심의회에서 선거구획정을 담당함
- 「중의원의원선거구획정심의회설치법」 제3조 제1항은 중의원소선거구선출위원의 선거구 개정안의 작성은 “각 선거구의 인구의 균형을 도모하고 각 선거구의 인구 중 그 최다의 것을 최소의 것으로 나누어 얻은 수가 2이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행정구획, 지세, 교통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행하여야 한다”라고 함으로써 인구편차의 규정을 엄격하게 하고 있음
- 심의회는 내각부 산하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됨. 위원은 국회의원이 아닌 자로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동의를 얻어 총리대신이 임명하며, 임기는 5년임
- 심의회는 10년마다 실시되는 국세조사결과에 의한 인구가 처음 관보에 공시되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선거구 재획정 권고를 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함

## V. 현행 선거구획정의 문제점

### 1. 획정기준 적용의 불명확성

- 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제19대 총선 선거구획정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인구상한선에 육박하지만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아 분구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5개 선거구들은 통합하도록 하였음. 대상 선거구는 서울 성동구 갑·을, 부산 남구 갑·을, 서울 노원구 갑·을·병, 대구 달서구 갑·을·병, 전남 여수시 갑·을 등임
- 서울 성동구 갑선거구(161,562명)과 을선거구(140,892명), 부산 남구 갑선거구(147,001명)과 을선거구(149,082명), 전남 여수시 갑선거구(132,976명)과 을선거구(159,873명)는 각각 단일선거구로 통합되는 안임
- 서울 노원구 갑선거구(178,017명)·을선거구(221,571명)·병선거구(205,816명) 그리고 대구 달서구 갑선거구(193,480명)·을선거구(242,822명)·병선거구(170,742명)는 각각 갑선거구와 을선거구로 통합·조정됨
- 그러나 2012년 2월 27일 통과된 선거구획정안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위의 원안과 달리 인구 104,342명인 남해군·하동군 선거구의 경우 인구하한선을 갖 넘겼지만 인접 사천시선거구(114,077명)와 통합됨
- 또 담양·곡성·구례군선거구(133,145명)도 인구하한선을 넘었지만 인접한 3개 선거구로 편입됨
- 인구상한선을 초과한 원주시 선거구(320,329명)는 갑·을선거구로 분구하면서, 이천시·여주 선거구(313,831)는 분구하지 않았음. 또 인구 367,700명의 용인시기흥구 선거구와 인구수 317,285명의 천안시 을선거

구는 선거구획정위의 원안과 달리 경계조정에 그쳤음

- 이처럼 선거구획정위의 원안을 비롯하여 개정된 선거구획정안에는 현행 인구편차 기준인 3:1에 따른 분구와 합구가 선거구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았음을 보여줌

## 2. 지역간 의석할당의 불균형

- 영호남과 충청권의 선거구당 평균 인구수를 단순 비교했을 때, 충청 215,087명, 영남 194,020명, 호남 169,266명의 순으로 권역별 유권자의 투표가치가 차별적으로 나타남

- 인구수가 15만 미만인 선거구는 충청권이 3곳에 불과한 반면, 호남권은 13곳, 영남권은 18곳에 달해 선거구분포에 있어서 지역간 불균형을 보임<sup>6)</sup>

- [표 3]은 선거구획정위의 ‘지역간 선거구 인구편차’를 보여주고 있음

- 권역간 인구편차는 -18%에서 +13%의 범위를 나타냄
- 지역주의 투표성향을 보이는 영·호남과 충청지역은 각각 -6%, -8%, +4%의 평균인구수 대비 권역별 편차를 보여 영호남지역보다 충청지역이 과소대표(under-represented)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6) 충청권 3곳은 보은군·옥천군·영동군, 부여군·청양군, 당진군; 호남권 13곳은 광주 동구, 익산시갑, 정읍시, 남원시·순창군, 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 고창군·부안군, 여수시갑, 광양시, 담양군·곡성군·구례군, 고흥군·보성군, 장흥군·강진군·영암군, 무안군·신안군, 함평군·영광군·장성군; 영남권 18곳은 김천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예천군, 군위군·의성군·청송군,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사천시, 의령군·함안군·합천군, 남해군·하동군, 산청군·함양군·거창군, 부산중구·동구, 서구, 영도구, 남구갑, 남구을, 대구동구갑, 북구갑.

- 권역간 보다도 광역시·도간 비교에서는 대표성의 차이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남
  - 대전의 경우 의석당 인구수가 252,313명인 것으로 나타나 평균 대비 인구편차가 +22%로 광역시·도 중 가장 높음
  - 반면, 전남은 의석 대비 평균인구수가 159,376명으로 인구편차가 가장 낮은 -23%임
  - 대전과 울산은 똑같이 6개 선거구로 획정되었는데, 인구수는 대전이 1,513,877명으로 1,134,125명인 울산보다 38만 명이 많음
  - 마찬가지로 대구는 전남보다 60만 명이 많지만, 선거구의 수는 각각 12개로 동일함. 이는 대구는 전남에 비해 과소대표되었다는 것을 의미함
- 권역별 선거구 인구편차는 -18%에서 +13%의 범위이지만 시·도간 인구편차는 -23%~+21%로서 훨씬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음. 이는 시·도간 인구편차가 권역단위에서는 상쇄되기 때문임
- 현행 선거구 분포 현황을 보면 권역별로는 충청>영남>호남의 순으로 평균인구수의 차이를 보이고, 시·도별로는 대전이 가장 많고 전남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 광역시·도 단위의 선거구 인구편차가 현격하게 나타나면 지역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선거구 획정시 이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임
- 다만, 광역시·도간 선거구 인구편차의 조정이 선거구획정의 일차적인 기준으로 작용될 수는 없음

- 광역시·도간 선거구 인구편차가 헌법적 관점에서 위헌적 요소는 아니기 때문임.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간 인구편차인 3:1은 특정 권역 또는 지역의 선거구간 인구편차의 범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선거구에 적용되는 기준임. 개별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3:1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지역별 인구편차가 이 범위를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임

[표 3] 지역별 선거구 인구편차 현황

(2011년 10월 31일 기준)

	구분	인구수(명)	선거구	선거구당 평균인구(명)	표준편차
계	전국	50,699,478	245	206,937	±0%
서울	서울	10,266,174	48	213,879	+3%
경기권	인천	2,794,493	12	232,874	+13%
	경기	11,908,014	51	233,490	+13%
	계	14,702,507	63	232,931	+13%
강원	강원	1,534,555	8	191,819	-7%
영남권	부산	3,554,635	18	197,480	-5%
	대구	2,509,297	12	209,108	+1%
	울산	1,134,125	6	189,021	-9%
	경북	2,695,145	15	179,676	-13%
	경남	3,305,621	17	194,448	-6%
	소계	13,198,823	68	194,020	-6%
충청권	대전	1,513,877	6	252,313	+22%

	구분	인구수(명)	선거구	선거구당 평균인구(명)	표준편차
	충북	1,560,895	8	195,112	-6%
	충남	2,096,445	10	209,645	+1%
	소계	5,171,217	24	215,087	+4%
호남권	광주	1,464,073	8	183,009	-12%
	전북	1,874,058	11	170,369	-18%
	전남	1,912,509	12	159,376	-23%
	계	5,250,640	31	169,266	-18%
제주	제주	575,562	3	191,854	-7%

자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보고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2011.11.18) 재구성

- 제18대 국회에서는 권역간 의석할당의 불균형 문제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출된 바 있음. 이 법안<sup>7)</sup>의 취지와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제안취지를 살펴보면 헌법재판소가 2001년 판결에서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3:1로 권고하고 장기적으로는 2:1까지 낮추도록 하였으나, 권역별 선거구획정의 불합리한 편차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음
  - 개정내용은 권역별 광역시·도의 국회의원 정수를 인구구성비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시 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두자는 것임

7) 김창수의원 대표발의(발의일자 2011년 5월 24일; 의안번호 1811900). 이 보고서 [부록] ‘시도별 인구비율과 국회의원석수 대비표’ 참조.

### 3. 인구기준일 설정의 유동성

- 인구수는 선거구획정의 핵심적인 기준으로 기능함. 인구수를 적용하는 기준일은 제18대 총선에서는 전년도(2007년) 12월 31일이었으나, 이번 제19대 총선에서는 전년도(2010년) 10월 31일이었음
- 인구기준일을 어떤 시점으로 설정하는가에 따라 선거구 획정결과는 차이를 보임. 특히 인구기준에 따라 정해지는 인구 상하한선의 경계에 위치한 선거구들은 인구기준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함
- 물론 동일한 인구기준일을 설정하였다더라도 인구수 상하한선의 조정에 따라 선거구획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지만, 인구기준일은 일차적으로 획정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할 수 있음
- 인구기준일이 관련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선거구획정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인상을 줄 수 있음
- 인구산정일을 특정 시점으로 관련법에 명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18대 국회에서 제출된 바 있음<sup>8)</sup>
  -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선거구의 인구수가 기준이 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선거구획정 전 인위적으로 인구를 증가시켰다가 선거구획정 후 인구가 빠져나가게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임
  - 이에 「공직선거법」 제24조(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인구 산정 시점을 보고서 제출 마감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8) 박우순의원 대표발의(발의일 2011년 11월 10일; 의안번호 1813815).

#### 4. 선거구획정위의 제한적 구속력

- 2004년 3월 12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구획정위는 국회의원이나 정당소속 인물의 참여를 배제하고 순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였음
- 더불어, 선거구획정위의 위원구성은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위촉함으로써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반영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선거구획정위가 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표방할 수 있는 환경은 구축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획정위의 권한은 매우 미약하다고 할 수 있음
- 현행 「공직선거법」 제24조 제10항은 국회가 선거구획정위의 조정안을 존중하는 수준으로만 명시하고 있어, 획정위의 원안이 단순히 권고안에 그치고 정치적 타협에 의해 변경될 소지가 다분함
- 선거구획정위의 조정안이 정개개혁특위의 논의과정에서 변경되면, 획정위 구성의 중립성이 보장된다고 해도 그 의미는 축소될 수밖에 없음
- 2006년과 2010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의 원안이 시·도의회 의결과정에서 특정 정당의 유불리에 따라 왜곡되었던 사실은 이러한 문제점을 잘 보여줌<sup>9)</sup>

9) 2006년과 2010년 지방선거의 선거구획정안은 특정 거대 정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광역의회에서 원안과 달리 2인 선거구로 변경되어 의결되었음. 이는 거대 정당에게는 3인 또는 4인선거구보다 2인 선거구가 유리하기 때문임.

## VI. 선거구획정의 개선방향

### 1. 선거구획정의 다면적 기준 고려

- 선거구획정에는 다양한 기준과 요인들이 포괄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인구수, 주민의 생활경제권과 행정구역, 지세·교통 등 생활권, 기존 선거구 현황 및 향후 조정가능성 등 다면적 검토가 요구됨
- 예컨대, 인구수가 적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은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지역대표성이 선거구획정에 반영되지 못함. 지역구선거에서는 지역고유의 특성과 현안이 대표선출의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지역대표성은 선거구획정에 소홀히 할 수 없는 기준임
- 특히, 도시로의 인구유입과 지방의 인구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인구수만을 편향되게 적용한다면 농촌지역의 선거구는 도시지역에 비해 지나치게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미국의 하원 선거구획정 과정을 보면 대부분의 주에서 인구수의 균등이라는 요소 이외에도 선거구의 지리적 인접성과 조밀성, 연방헌법 및 선거법과의 합치성, 행정구역과의 조응성, 지역이익의 대표성, 정치적 경쟁성, 상원선거구에의 귀속성, 정당 및 선거관련 자료의 배제성 등을 일반적인 획정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sup>10)</sup>
- 2012년 2월 27일 통과된 공직선거법 선거구획정안이 세종특별자치시의 단독선거구 설치를 결정한 것은 이러한 선거구획정기준의 다면적 고려

10) League of Women Voters of North Carolina, "redistricting criteria," <[http://lwvnc.org/issuesaction/documents/Redistricting\\_Criteria.pdf](http://lwvnc.org/issuesaction/documents/Redistricting_Criteria.pdf)>.

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임.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선거구획정의 인구기준 하한선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법적·행정적 위상과 지역 대표성 등의 측면을 고려할 때 독립선거구로 설치될 수 있는 근거가 됨

- 앞서 살펴보았듯이 국회에서 통과된 선거구획정 결과에서 분구와 합구 대상 선거구가 편향적으로 결정된 것은 현행 선거구획정방식이 인구편차 3:1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선거구간 또는 광역시·도간 인구편차의 균형이 보장되기 어려운 현실때문임
- 인구상하한선에 집중되어 있는 경계선거구들은 인구편차기준에 부합하지만 개별 선거구간 또는 광역시·도간 인구편차는 심각한 불균형을 보일 수 있음
- 따라서 인구편차의 기준과 별도로 선거구 평균인구수와 행정구역과의 조응성 등을 보완적 기준으로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즉,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편차 상하한선을 일차적인 획정기준으로 적용하되, 평균인구수로부터의 근접도와 행정구역과의 조응성을 고려하여 선거구를 획정하는 방안임
- 이는 전체의석수의 변동을 최소화하고, 개별 선거구간 그리고 광역시·도간 인구편차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선거구획정의 거시적 조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임

## 2. 광역시·도간 대표성의 균형

- 인구기준에서 선거구획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선거구간’ 인구편차만을 기준으로 설정하기보다 ‘광역시·도간’ 대표성의 균형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개별 선거구간 인구격차가 전국단위에서 보면 허용범위 내에 있다 하더라도 광역시·도간 대표성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지역주의 투표성향이 존재하는 우리의 현실에서 지역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음
-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광역시·도간 인구편차의 문제는 개별 선거구간 인구편차의 문제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것은 아님
- 이러한 맥락에서 광역시·도간 대표성 제고를 위하여 광역시·도 단위 인구수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하자는 법률안이 제안됨<sup>11)</sup>
- 이 방식은 총의석 598석을 주별 유권자수에 따라 비례배분하는 현행 독일연방하원 선거제도와 유사한 방식으로서, 전체의석을 광역시·도 단위로 인구수에 비례하여 배분하므로 지역간 대표성의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음
- 하지만 의석배분의 단위를 ‘16개 광역시·도’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245개 선거구를 전국단위에서 평균인구수의 상하 50%의 범위로 정하고 있는 현행 선거구 획정방식과 배치될 수 있음
- 또한 광역시·도별로 배분되는 의석배분에서 발생하는 잔여의석의 산정 방식이 명확하지 않음
  - ‘16개 시·도별 비례배분 방식’에 따르면 대전지역의 경우 총의석 243석 중 7석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인구비례를 엄격히 적용하면 7.3석이 됨. 어떤 의석배분방식(예컨대 최대잔여방식인 헤어니마이어식 또는 최대평균방식인 동트식, 생라그식 등)을 적용했는가에 따라 배분결과가 차이를 보이고, 그것은 투표가치의 평등이라는 관점에서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임<sup>12)</sup>

11) 김창수의원 대표발의(발의일자 2011년 5월 24일; 의안번호 1811900).

### 3. 인구기준일의 법정화 및 합리적 설정

-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의 인구기준과 관련하여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음
- 「공직선거법」 제4조(인구의 기준): “(...)선거사무관리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최근 인구통계에 의한다.”
- 농촌인구의 격감과 도시로의 인구유입이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인구 기준일에 따라 분구 또는 합구 대상 선거구분포가 달라질 수 있음
- 이처럼 인구기준일 설정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인구수 기준일을 「공직선거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선거구획정작업이 면밀한 자료조사와 검토를 위해 많은 시간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인구기준일은 보고서 제출 마감일<sup>13)</sup>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12) 동트식(d'Hondt)은 정당의 유효득표수를 순차적인 정수로 나누어, 그 몫이 최대인 순으로 의석을 배정하는 방식임. 생라그식(Sainte-Laguë)은 동트식과 같은 최대평균식이지만, 계수를 1, 3, 5, 7 ... (또는 0.5, 1.5, 2.5 ...) 등을 사용한다는 점이 다름. 헤어-니마이어식(Hare-Niemeyer)은 배분정수(총투표수/의석수)로 각 정당의 득표수를 나눈 정수부분 만큼 의석을 우선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이하가 큰 순으로 총의석수만큼 배분하는 방식임.

13) 현행 「공직선거법」 제24조7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의 선거구획정 관련 보고서의 제출기한은 선거일 전 6개월임.

#### 4. 선거구획정위의 상설화 및 권한강화

- 선거구획정위의 조정안이 정개특위에서 자의적으로 변경되는 것을 막고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한시적 기구로 존재하는 선거구획정위를 상설 기구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상설기구가 되면, 외국의 사례처럼 선거구획정위가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고, 충분한 자료검토와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선거구획정위의 상설기구화와 더불어 획정위에 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sup>14)</sup> 이는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이 국회 정개특위에서 정당간 또는 의원간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해 획정 과정이 지연되고 원안이 특정 정당이나 의원에 유리하게 편향적으로 변경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을 것임
- 하지만 선거구획정위의 권한강화가 국회의원의 입법권 침해 내지 약화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임.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이 특정 선거구와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법률의 제·개정을 요구하고, 해당 조문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할 때 그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원의 입법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

14) 2012년 3월 5일 박기춘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안은 선거구획정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상시적으로 두고,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그대로 부의하여 처리하되, 수정의결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의안번호 1814719).

## VII. 맺는말

- 선거구획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선거의 원칙, 즉 유권자 개개인의 투표가치가 평등하게 구현될 수 있는 선거구의 공정한 구획을 의미함
- 이 점에서 선거구간 인구편차의 허용범위를 엄격히 적용하고 편차를 최소화하여 가능한 한 평균인구수에 근접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 선거구획정위의 제19대 총선 선거구획정안의 기본방향은 헌법재판소의 선거구간 인구편차 3:1의 원칙에 입각하여 인구상하한선을 벗어난 선거구는 분리 또는 통합 조정하는 것임
- 2012년 2월 27일 통과된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구획정결과는 몇 가지 점에서 비판적 견해가 제시될 수 있음
  - 첫째, 획정기준이 편향적으로 적용된 측면이 있음. 예컨대, 파주시와 원주시선거구는 인구상한선을 초과하였다는 근거로 분구하였으나 수원시 권선구나 이천시여주군, 천안시 을선거구는 분구하지 않았음. 또 용인시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는 분구 대신 경계조정에 그쳤음. 인구기준에 따르면 분구되어야 함에도 특정 선거구만 분구하고 분구가 아닌 경계조정으로 대신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선거구획정기준이 편향적으로 적용되었다고 할 수 있음
  - 둘째, 인구편차의 허용범위 내에 속하더라도 지역간 인구편차의 문제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다고 볼 수 있음. 광역시·도간 선거구 인구편차의 조정이 선거구획정의 일차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 광역시·도간 선거구 인구편차가 현격하게 나타나면 지역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음

- 셋째, 선거구 확정결과에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는 인구기준일의 적용 시점에 관한 규정이 미비함. 선거구획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인구기준 적용시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넷째, 선거구획정위가 자문기구의 성격을 가져 원안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높고, 확정시한도 준수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함
- 선거구획정과 관련한 이상의 문제점들에 대하여 이 보고서에서는 다음의 개선방향을 제안함
- 첫째, 선거구획정시 인구수를 비롯하여 지역별 인구편차, 선거구와 행정구역의 조응성, 선거구의 평균인구수 등 다양한 획정기준들이 포괄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임
  - 둘째, 인구기준에서 선거구획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선거구간’ 인구편차만을 기준으로 설정하기보다 ‘광역시·도간’ 대표성의 균형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광역시·도간 대표성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지역주의 투표성향이 존재하는 우리의 현실에서 지역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음
  - 셋째, 인구기준일을 선거구획정이 충분한 논의와 사전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적정 시점을 정하여, 이를 관련 법률에 규정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선거구획정위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구획정위를 상설기구화하고 획정위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권한강화는 선거구획정위의 원안이 국회논의과정에서 당리당략에 의해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율되어야 할 것임



## 참고문헌

- 강원택,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혁: 의원정수 및 선거구 획정문제를 중심으로」, 『국가전략』 제8권 3호, 2002, pp. 133-151
- 강휘원, 「제17대 국회의원 선거구의 조밀성 측정과 GIS」, 『한국정치학회보』 제40집 2호, 2006, pp. 99-123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보고서』, 2011.11.18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제19대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2011.10.14
- 김도중·김형준, 「선거구획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인구대표성과 지역대표성의 조화를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제11집 제2호, 2003, <<http://www.nec.go.kr/dev/multiboard/board.jsp?id=b21&groups=0&key=subject&search=&order=&desc=&code=0&mode=view&idx=287>>
- 대통령자문 사회통합위원회, 『지역주의 극복과 사회통합을 위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방안』, 서울, 2010
- 성낙인, 「지역구국회의원선거구획정에 있어서 인구편차의 기준」, 『서울대학교법학』 제43권 제1호, 2002, pp. 81-102
- 심지연,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의 변화」, 『한국정당학회보』 제4권 제2호, 2005, pp. 45-72
- 여의도연구소, 『선거제도 선진화 방안 발제문』, 지역주의타파를 위한 선거제도 선진화방안 토론회(2009.9.17), <[http://www.ydi.or.kr/cafebbs/view.html?gid=main&bid=ydi\\_pds&pid=10877](http://www.ydi.or.kr/cafebbs/view.html?gid=main&bid=ydi_pds&pid=10877)>
-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Baker v. Carr Appeal from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middle district of Tennessee”(검색일: 2012.2.10), <[http://www.law.cornell.edu/supct/html/historics/USSC\\_CR\\_0369\\_0186](http://www.law.cornell.edu/supct/html/historics/USSC_CR_0369_0186)>

\_ZS.html>

German Bundestag, "Bundeswahlgesetz"(검색일: 2012.2.10), <[http://www.bundestag.de/dokumente/rechtsgrundlagen/bwahlg\\_pdf.pdf](http://www.bundestag.de/dokumente/rechtsgrundlagen/bwahlg_pdf.pdf)>

United Kingdom Legislation, "Boundary Commissions Act 1992"(검색일: 2012.2.10), <[http://www.legislation.gov.uk/ukpga/1992/55/pdfs/ukpga\\_19920055\\_en.pdf](http://www.legislation.gov.uk/ukpga/1992/55/pdfs/ukpga_19920055_en.pdf)>

## [부록] 시도별 인구비율과 국회의석수 대비표<sup>15)</sup>

구분	2000년				2011년 4월				개정안 적용시 의석수 변동추계
	인구	구성비	의석수	의석당 인구수	인구	구성비	의석수	의석당 인구수	
전 국	46,136	100.0	227	203	50,594	100.0	245	207	243
서 울	9,895	21.4	45	220	10,302	29.36	48	215	50(+2)
부 산	3,663	7.9	17	215	3,563	7.04	18	198	17(-1)
대 구	2,481	5.4	11	226	2,511	4.96	12	209	12
인 천	2,475	5.4	11	225	2,772	5.48	12	231	13(+1)
광 주	1,353	2.9	6	226	1,459	2.88	8	182	7(-1)
대 전	1,368	3.0	6	228	1,508	2.98	6	251	7(+1)
울 산	1,014	2.2	5	203	1,129	2.23	6	188	5(-1)
경 기	8,984	19.5	41	219	11,841	23.40	51	232	57(+6)
강 원	1,487	3.2	9	165	1,532	3.03	8	192	7(-1)
충 북	1,467	3.2	7	210	1,554	3.07	8	194	8
충 남	1,845	4.0	11	168	2,084	4.12	10	208	10
전 북	1,891	4.1	10	189	1,869	3.69	11	170	9(-2)
전 남	1,996	4.3	13	154	1,914	3.78	12	160	9(-3)
경 북	2,725	5.9	16	170	2,689	5.31	15	179	13(-2)
경 남	2,979	6.5	16	186	3,296	6.51	17	194	16(-1)
제 주	513	1.1	3	171	573	1.13	3	191	3

15) 김창수의원실, "김창수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 발의"(2011.5.19),  
<<http://www.csthink.co.kr>>



## 현안보고서 발간 일람

호 수	제 목	발간일	집필진
제1호	태안기름누출사건에 따른 국가 위기대응태세점검 및 향후대책	2007.12.18.	김종연 최준영
제2호	국제지명표준화 관점에서 바라본 독도표기문제 및 대응방안	2008. 7.31.	김종연 최준영
제3호	인터넷 실명제 쟁점	2008. 8.28.	김여라
제4호	한·미 방위비 분담의 현황과 쟁점	2008. 8.28.	김영일 신중호
제5호	국민연금과 직영연금 간 가입기간 연계제도	2008.10. 6.	원시연
제6호	2008 미국 대선의 주요 이슈와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2008.10. 8.	김준 외 7인
제7호	미국의 대북제재현황과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의 영향	2008.10.15.	이승현
제8호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쟁점과 입법부의 과제	2008.10.31.	하혜영 외 6인
제9호	오바마시대 개막의 의의와 시사점	2008.11. 6.	김준 외 7인
제10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률 검토 및 쟁점 분석	2008.12. 8.	박준환
제11호	군경력 가산점제 재도입 논의의 쟁점	2008.12.10.	조규범
제12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국회심의규정의 검토 및 개정방향	2008.12.11.	정민정 김남영
제13호	사이버공간에서의 이용자 보호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역할	2008.12.11.	이유주
제14호	인터넷 전화와 번호이동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2008.12.11.	박 철
제15호	선진국형 식품안전관리체계 마련 방안	2008.12.12.	김 준 배민식
제16호	공무원연금제도 개혁논의와 주요 쟁점	2008.12.22.	원시연
제17호	주식 공매도 현황 및 개선방안	2008.12.29.	박충렬

호 수	제 목	발간일	집필진
제18호	기초보장 급여체계의 개선 : 개별급여 방식을 중심으로	2008.12.30.	유해미
제19호	국가대표선수 은퇴 후 진로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의 현황 및 발전방향	2009. 1. 7.	김신애
제20호	국회 및 주요국 의회의 질서유지제도	2009. 2. 6.	전진영
제21호	선상투표제도 도입관련 쟁점 및 시사점	2009. 2.20.	김종갑 외 3인
제22호	강제철거에서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향	2009. 2.23.	조규범
제23호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도입관련 쟁점분석	2009. 4. 1.	유재국
제24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일부 위헌 판결에 따른 영향분석 및 후속조치 검토	2009. 4. 1.	박준환
제25호	정치자금 소액기부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2009. 4.14.	조만수
제26호	헌법재판소 변형결정의 기속력에 관한 입법개선방향	2009. 4.16.	김선화
제27호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의 현황과 쟁점	2009. 5.11.	정민정
제28호	영리병원 도입 논의 및 정책과제	2009. 5.15.	이만우
제29호	일자리 나누기 정책의 개선과제	2009. 6. 2.	정종선
제30호	LED 조명산업의 현황과 지원정책의 개선방향	2009. 6.30.	유재국 이상은
제31호	금융채무불이행자 현황 및 지원정책의 개선방향	2009. 7. 9.	임동춘 주규준
제32호	존엄사 입법화의 쟁점과 과제	2009. 8.13.	이만우 조규범
제33호	온라인상 불법저작물 대책 및 개선방향	2009. 8.21.	나채식
제34호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대응책의 현황 및 개선방안	2009. 8.21.	이유주
제35호	일본의 정권교체 그 의미와 시사점	2009. 9. 3.	이현출

호 수	제 목	발간일	집필진
제36호	북한 황강댐 방류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2009. 9.22.	정민정 김상욱
제37호	미국하원의 발언관련 규범	2009. 9.28.	전진영
제38호	법률명 약칭 법제화 방안	2009. 9.28.	김남영
제39호	저출산 대응 주요정책의 현황 및 과제	2009.10.15.	유해미
제40호	신종플루의 대유행(Pandemic) 및 정책대응	2009.10.16.	이만우 허종호
제41호	대규모 소매점에 대한 규제: 쟁점과 대안	2009.10.20.	박충렬 정민정
제42호	석면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현황, 문제점,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2009.10.21.	김 준 최준영
제43호	희유(稀有)금속자원 재활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9.10.27.	김경민 신가은
제44호	입학사정관제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한 제언 - 미국입학사정관제의 시사점 -	2009.11.10.	정환규
제45호	국회 인사청문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2009.11.12.	전진영 김선화 이현출
제46호	고령사회 대비 노인요양시설확충사업의 방향성 검토	2009.11.20.	원시연
제47호	방송광고판매 경쟁체제 도입과 쟁점	2009.11.27.	김여라
제48호	‘7.7 DDoS 사고’ 대응의 문제점과 재발방지 방안	2009.12. 1.	배성훈
제49호	한-인도 CEPA의 인력유입효과 제고방안	2009.12. 3.	정민정
제50호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2009.12. 9.	박영원
제51호	일·가정 양립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9.12.10.	조주은
제52호	와이브로(WiBro)사업의 현황과 발전 방향	2009.12.15.	김유향
제53호	수입수산물 안전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009.12.16.	장영주

호 수	제 목	발간일	집필진
제54호	경찰의 주취자 보호·관리제도 개선방안	2009.12.17.	하혜영 유규영
제55호	버스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과 과제	2009.12.18.	박준환
제56호	미국의회의 입법과정과 우리 국회에 대한 시사점	2009.12.22.	전진영
제57호	조선산업의 현황과 정책 과제	2009.12.23.	전은경 이상은 김봉주
제58호	오바마 정부의 비핵화 정책과 북핵문제	2009.12.24.	김영일 유웅조
제59호	교통단속시스템 무력화 장비의 사용실태와 입법적 과제	2009.12.28.	유규영 하혜영
제60호	육우산업의 현황과 정책과제	2009.12.30.	배민식
제61호	고령사회 대비 주치의 제도 도입 검토	2009.12.30.	이만우
제62호	프랑스 소재 외규장각 도서의 국내반환 방안	2010. 1.20.	정민정 유의정
제63호	다태아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0. 1.28.	김주경 조주은
제64호	저출산·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이민정책의 개선 과제	2010. 2. 1.	유의정
제65호	고령자 일자리 정책의 현황과 개선 방향	2010. 2. 3.	김 준
제66호	칠레 우파 대통령 탄생의 배경과 의미	2010. 2. 5.	김영일 이현출
제67호	콘텐츠정책의 평가와 주요국 사례비교	2010. 2.10.	김유향 최준영
제68호	애니메이션 산업의 현황 및 발전방향	2010. 2.11.	나채식
제69호	게임콘텐츠의 현황 및 육성 방안	2010. 2.17.	김신애
제70호	방송콘텐츠 현황 및 육성방안	2010. 2.22.	김여라
제71호	모바일 오픈마켓을 활용한 모바일 콘텐츠시장 활성화 방안	2010. 3. 2.	이유주

호 수	제 목	발간일	집필진
제72호	WTO/DDA 수산보조금 협상 대응방안 - 어업용 면세유를 중심으로 -	2010. 3. 3.	정민정 장영주 김경민
제73호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	2010. 3. 9.	전은경 유재국 김봉주
제74호	미국하원의 선물 및 여행관련 윤리규정과 우리나라 회에 대한 시사점	2010. 4.14.	전진영
제75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인력 현황과 개선방안	2010. 5. 3.	하혜영 박영원
제76호	지방자치단체 민간이전경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0. 5. 3.	유의정
제77호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재정 현황 및 개선방안	2010. 5. 3.	이유주
제78호	지방의회의 재정 감독권 강화방안	2010. 5. 3.	이정진
제79호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감사체계의 개선방향	2010. 5. 3.	조규범
제80호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10. 5. 3.	권아영 임언선
제81호	G20 정상회의의 발전과 주요 과제	2010. 5.17.	김영일 유용초
제82호	목표인구 과다설정에 기초한 지역개발사업 추진 의 문제점과 대응과제	2010. 5.18.	장경석 유재국
제83호	아동수당제도 도입 시 쟁점 및 정책과제	2010. 5.24.	유해미
제84호	2010 영국총선의 분석과 향후 전망	2010. 6. 7.	김영일 이정진 김 지
제85호	고령사회를 대비한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대책	2010. 6.11.	박준환
제86호	주요국의 무상급식 현황 및 시사점	2010. 6.15.	이덕남 한지호
제87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금융질서 개편 과제	2010. 6.28.	원종현
제88호	고령사회에 대응한 식품산업의 과제	2010. 7.29.	장영주 김봉주

호 수	제 목	발간일	집필진
제89호	양육 미혼모 관련 정책 현황과 개선방안	2010. 7.29.	조주은
제90호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	2010. 8. 6.	김경민 이동영
제91호	청소년 건강증진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학교보건 서비스, 행정체계 및 자원 검토 -	2010. 8.25.	이만우 허종호
제92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제도에 대한 검토	2010.10. 4.	이건호
제93호	국가 정보보호 정책현황과 개선방안	2010.10.20.	배성훈
제94호	2010년 세법개정의 주요 쟁점	2010.10.21.	전완희 허원
제95호	장기미처리법률안의 해결방안	2010.10.22.	정대영 김미숙 박영원 전완희 이정은
제96호	건강보험 보장성의 쟁점과 과제 - '건강보험하나로' 논의 등을 중심으로 -	2010.10.25.	김주경
제97호	오픈 프라이스제의 현황과 보완방안	2010.10.26.	김민지 김봉주
제98호	주요국 공직자비리수사기구의 현황과 시사점	2010.11.16.	전태희
제99호	사전투표제의 국가별 운영현황과 국내도입방향	2010.11.26.	김종갑 이현출
제100호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	2010.11.29.	박총렬
제101호	도시하천의 건천화 방지를 위한 물순환 건천화 대책	2010.11.30.	김상욱
제102호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의 현황과 과제	2010.12. 2.	박미정
제103호	국회 인사청문제도 개선방안	2010.12.21.	이현출 전진영 김선화 유재민
제104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방안	2010.12.22.	최석림 조규범 이주연 김민지

호 수	제 목	발간일	집필진
제105호	한반도 통일비용의 쟁점과 과제	2010.12.23.	이승현 김갑식
제106호	독일의 의무교육 무상지원 동향 및 시사점	2010.12.23.	이덕난 한지호
제107호	천일염 산업의 현황과 발전방안	2010.12.24.	배민식
제108호	국정감사 및 조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2010.12.24.	최정인 김 지
제109호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입법 및 정책 방안	2010.12.27.	이덕난 유지연
제110호	전기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법령정비 방안	2010.12.28.	김경민 박준환
제111호	원자력 발전 설비의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	2010.12.28.	유재국
제112호	디지털시대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 제고 방안	2010.12.30.	김여라
제113호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0.12.30.	이만우
제114호	공공문서에 대한 개방된 형식 도입의 필요성과 정책 방향	2010.12.31.	배성훈 이승현
제115호	한·중·일 교역구조와 산업정책의 비교분석: 부품·소재 산업을 중심으로	2011. 2.22.	전은경
제116호	교통안전·방법활동에서 주민과 경찰간 협력강화 방안	2011. 3. 2.	하혜영 권아영
제117호	자살예방대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2011. 3.15.	원시연
제118호	게임 셧다운제의 도입과 향후 정책 방향	2011. 5.27.	조형근
제119호	주택 임대료 규제 관련 국내·외 동향과 시사점	2011. 6.29.	장경석
제120호	세무조사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2011. 7. 1.	정대영 김보례
제121호	2010년 위헌법률결정 현황과 주요 쟁점 및 입법에 의 시사점	2011. 7. 1.	김선화 최정인
제122호	저축은행 부실 현황 및 과제 -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	2011. 7. 7.	김효연
제123호	다기능 보(洑)의 적정 운영을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 방향	2011. 7.22.	김상욱

호 수	제 목	발간일	집필진
제124호	모바일 유해 애플리케이션의 현황과 대응방향	2011. 8. 4.	조희정 이승현
제125호	주요국의 의원연금제도	2011. 9.20.	전진영
제126호	가정내 불용의약품 수거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1.10.20.	김경민 이동영
제127호	대학강사의 노동조건과 기대소득 분석	2011.10.21.	정환규
제128호	2011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쟁점	2011.10.28.	서동국 임언선 허원
제129호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 5년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중심으로-	2011.11.23.	장경석 박인숙
제130호	국내 연안침식 방지를 위한 정책 과제	2011.11.24.	김상욱
제131호	지방의회 의정지원활동 운영실태와 향후 과제	2011.12. 6.	하혜영
제132호	복수국적자의 공무담임권 제한	2011.12.20.	김선화
제133호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2011.12.20.	김민지 김봉주
제134호	북방한계선(NLL)문제와 대응방안	2011.12.27.	정민정
제135호	군기사고 예방을 위한 관심병 관리제도 개선방안	2011.12.28.	형혁규
제136호	지상파방송의 디지털전환 추진현황 및 과제	2011.12.29.	김여라
제137호	입법영향분석시리즈 2011-1 :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규정의 입법영향분석	2011.12.30.	김 준
제138호	입법영향분석시리즈 2011-2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입법영향분석	2011.12.30.	원시연
제139호	입법영향분석시리즈 2011-3 : 「국가공무원법」상의 여성채용목표제와 양성채용목표제의 입법영향분석	2011.12.30.	박영원
제140호	입법영향분석시리즈 2011-4 :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입법영향분석	2011.12.30.	유웅조
제141호	공공업 현황과 발전방안	2011.12.30	조희정 이승현

호 수	제 목	발간일	집필진
제142호	설비투자 부진 요인과 활성화 방안	2011.12.30.	조주현
제143호	북핵 일괄타결 협상안과 6자회담: 추진현황과 정책과제	2012. 1.25.	이승현
제144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입법영향분석 - 경제적 효과를 중심으로 -	2012. 2.21.	원종현
제145호	문화외교와 국제문화교류 부문 정책수행체계의 개 선방안	2012. 3.13.	김휘정
제146호	디지털 환경에서 영상물 유통 규제 개선방안: 영상물 등급분류 제도를 중심으로	2012. 3.23.	조형근

-----NARS]



## 현안보고서 제147호

---

발 간 일 2012년 3월 26일  
발 행 심지연  
편 집 정치행정조사실 정치의회팀  
기획관리관 기획협력팀  
발 행 처 국회입법조사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  
TEL 02·788·4524  
인 쇄 경성문화사 (TEL 02·786·2999)

---

1. 이 책자를 허가 받지 않고 복제하거나 전재해서는 안 됩니다.
  2.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집필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전문(全文)은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http://www.nars.go.kr>) 'NARS 발간물'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ISSN 2005-3215

발간등록번호 31-9735006-000631-14

© 국회입법조사처, 2012

현안보고서 제147호

##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